의안번호	2205772
의 뢰 인	유상범의원
회 답 일	2025.2.19.
추계번호	24D529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가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억 2,000만원, 2030년 10억 4,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9억 200만원(연평균 9억 8,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안 제19조의5제3항 등)	920	949	979	1,011	1,043	4,902	980

주1.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주2.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1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함)에 대한 도입・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2항 신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6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1항 신설	-	미대상: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2항 신설	-	미대상: 법무부는 출입국정책단장 주재로 연 2회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고, 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음 배정협의회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급이 참석하고 있어, 2024년 기준 배정심사협의회 관련 편성된 예산은 없음
3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
4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제6항 신설	-	미대상: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및 국내 체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개발비 9억 6,100만원과 인프라(H/W, S/W)구축비 15억 4,100만원을 편성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함

-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와 대응하는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

❑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1)]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안 제1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개정안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국가별 계절근로 전문인력 인건비, 운영비, 조사·연구 및 홍보, 국외 여비 등임

○ (인건비)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인력은 총 10명(업무총괄 1명, 송출국 전문인력 7명, 행정지원 2명)으로 하고, 보수는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6,000만원에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운영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국내 여비, 공과금 등으로 연간 1억 2,000만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사업비) 계절근로 실태조사, 제도 홍보, 박람회 개최 등 사업비 2억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1)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기준)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9억 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건비	600	623	646	671	697	3,237
운영비	120	122	125	127	130	624
사업비	200	204	208	212	216	1,041
합 계	920	949	979	1,011	1,043	4,902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